

의안번호	제466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6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6
----------	-----

제출연월일 : 2020년 6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반영,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 변경(안 제3조)
 - 5천원 → 1만원으로 개정(도로법 시행령 제71조)
-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일 신설(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점용기간 이”를 “점용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u>	<u>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u>
<p>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u>점용기간 이</u>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u>5천원</u> 미만인 경우에는</p>	<p>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p> <p>① <생 략></p> <p>② ----- ----- -----, <u>점용기간이</u> -----</p> <p>----- -----</p> <p>-----</p> <p>③ <생 략></p> <p>④ ----- ----- <u>1만원</u> -----</p>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
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관련법령 발췌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